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6. 12 선고 2019가단2388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행]

---

## 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 B의 소송대리인 A

피고C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0. 5. 29.

판결 선고2020. 6. 1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D 대 306m<sup>2</sup>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1. 10. 21. 접수 제57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○ 원고들은 2014. 12. 29. E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대 306m<sup>2</sup>(이하,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매수한 뒤 같은 달 30.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○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. 10. 21. 같은 달 13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만 원,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,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가 마쳐져 있다.

○ 피고는 2004. 12. 13.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뒤, 2007. 12. 2. 청산종결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

## **2. 판단**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현재 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**3. 결론**

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**이상현